

[별표 34] <신설 2017.1.26., 개정 2022.12.23., 2025.12.23.>

## 보험종목별 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기준 등(제4-16조 관련)

### 1. 용어의 정의

가. 적립대상보험료 :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 문단 105 (1) (가)에 따른 수취한 보험료에서 지불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(단, 동 기준서 문단 86 (2)에 따라 보험료 감소로 처리한 수수료를 가산하고, 계약의 해지로 인해 지급하거나 환급받은 보험료 중 동 기준서 문단 103 (3)에 따른 공시항목에 포함된 금액은 차감한다.)

나. 발생손해액 : [별표4] 계정과목별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발생보험금, 발생손해조사비 및 발생사고요소조정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,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에서 정의한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계약이 아닌 경우 포괄손익계산서의 손실부담계약관련비용을 합산할 수 있다.

다. 예정손해액(출재는 원보험에 차감)

#### (1) 원수

(가)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에서 정의한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계약이 아닌 경우 [별표4] 계정과목별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예상보험금, 예상손해조사비와 위험조정변동을 합한금액

(나)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에서 정의한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계약의 경우 보험료배분접근법적용수익에 상품기초서류상의 예정위험률과 예정손해조사비율의 합을 곱한 금액

#### (2) 국내, 해외수재

(가)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에서 정의한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계약이 아닌 경우 [별표4] 계정과목별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예상보험금, 예상손해조사비와 위험조정변동을 합한금액

(나)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에서 정의한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계약의 경우 보험료배분접근법적용수익

(3) 예정손해액 계산시 손실요소배분액을 차감한다.

## 2. 적립기준율

구분	화재	해상	자동차	보증	특종	해외수재 및 해외원보험
적립 기준율	5%	3%	1%	10%	3%	6%

- 주1) ‘장기손해보험, 개인연금 및 생명보험’의 원보험과 그 국내수재는 제외한다.  
 주2) 국내수재는 각 원보험에 포함하여 적용한다.

## 3. 일정비율

구분	화재	해상	자동차	보증	특종	해외수재 및 해외원보험
적립대상 보험료의 일정비율	50%	50%	35%	120%	40%	45%
예정대비 발생손해액의 일정비율	120%	110%	110%	140%	110%	110%

- 주1) ‘장기손해보험, 개인연금 및 생명보험’의 원보험과 그 국내수재는 제외한다.  
 주2) 국내수재는 각 원보험에 포함하여 적용한다.